|  |  |  |
| --- | --- | --- |
| **일부 규장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세관총서의 결정**  세관총서 제198호 령  《일부 규장(規章)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세관총서의 결정》을 2010년11월 15일의 세관총서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장 盛光祖  2010년 11월 26일  의법 행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의 세관 규장을 개정하기로 결정한다.  1. 아래의 세관 규장 중의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1)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출입국 여객 수화물 감독관리방법》(署令 제9호) 제17조 제1항과 제2항 중의 “《분류표》 제3, 4, 5부류의 물품”을 “《분류표》 제3부류의 물품”으로 개정한다.  (2）《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통과여객의 수화물 관리규정》(署令 제25호) 별첨 1, 2를 삭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통과여객의 수화물 관리규정》(署令 제25호) 제4조 “《여객의 출입국 수화물 분류표》(별첨 1 참조) 제3, 4, 5부류의 물품”을 “《출입국 여객 수화물 분류표》 제3부류의 물품”으로 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통과여객의 수화물 관리규정》(署令 제25호) 제8조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금지 물품표》(별첨 2 참조) (비고) 열거한 물품을 모두 휴대할 수 없다.”를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금지 물품표》에 열거한 물품을 휴대할 수 없다.”로 개정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출입국 여객의 통관 관련 규정》(署令 제55호) 제6조 “세관이 수속을 처리하고 날인하여 여객에게 발급한 신고서 부본이나 전용 신고증서”를 “세관이 수속을 처리하고 날인하여 여객에서 발급한 전용 신고증서”로 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출입국 여객의 통관 관련 규정》(署令 제55호) 제8조 “《출입국 여객 수화물 분류표》 제2, 3, 4부류의 물품”을 “《출입국 여객 수화물 분류표》 제2, 3부류의 물품”으로 개정한다.  (4) 《국경장터(边民互市) 무역 관리방법》(署令 제56호) 제5조 “국경지역 거주민이 매인 매일 국경출입항이나 국경장터 무역구로부터 휴대하여 입국하는 물품 가치가 인민폐 1,000위안 미만인 경우 수입관세와 수입단계세금을 면제하며, 인민폐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미만인 경우 《입국 여객 수화물 및 개인의 우체물품 수입세금 징수방법》의 규정에 따라 초과부분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며, 5,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세칙》에 따라 수입관세와 수입단계세금을 징수함과 아울러 수입화물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한다.”를 “국경지역 거주민이 장터무역을 통해 수입하는 생활용품(국경장터 수입상품의 면세불허리스트에 열거한 것은 제외)은 매인 매일 가치가 인민폐 8,000위안 미만인 경우 수입관세와 수입단계세금을 면제하며, 인민폐 8,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수입관세와 수입단계세금을 징수한다.”로 개정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중국국적 여객의 수화물 관리규정》(署令 제58호) 제7조 “ 또는 《입국 여객의 수화물 및 개인의 우체물품 수입세금 징수방법》에 의거하여 세관에 수입세금을 보완 납부한다.”를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에 수입세금을 납부한다.”로 개정한다.  (6)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빈곤구조, 자선성 기증물자 수입세금 면제 잠정방법> 시행방법》(署令 제90호) 제8조를 삭제한다.  (7)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기한경과 미신고 수입화물, 하역오류 또는 양륙과잉 입국화물 및 포기 수입화물 처리방법》(署令 제91호) 제12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법인, 기타 조직이나 개인”으로 개정한다.  (8)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밀수용의 화물, 물품 포탈세금 계산 잠정방법》(署令 제97호) 제6조, 제12조 “세관의 밀수범죄 수사기관, 세관의 조사부문”을 “세관의 관련부문”으로 개정한다.  (9)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내륙과 홍콩 간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 구축에 대한 안배> 항목하의 <화물무역에 대한 원산지 규칙> 규정》(署令 제106호) 제2조 “이 규정은 홍콩으로부터 수입한 《안배》 항목하의 화물(제품리스트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에 적용한다. 다만 가공무역방식으로 수입한 화물은 예외로 한다.”를 “이 규정은 홍콩으로부터 수입한 《안배》 항목하의 화물(제품리스트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에 적용한다.”로 개정한다.  (10)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내륙과 마카오 간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 구축에 대한 안배> 항목하의 <화물무역에 대한 원산지 규칙> 집행과 관련한 규정》(署令 제107호) 제2조 “이 규정은 마카오로부터 수입한 《안배》 항목하의 화물(제품리스트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 참조)에 적용한다. 다만 가공무역방식으로 수입한 화물은 예외로 한다.”를 “이 규정은 마카오로부터 수입한 《안배》 항목하의 화물(제품리스트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 참조)에 적용한다.”로 개정한다.  (11)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중화인민공화국과 동남아국가연합 간 전면적 경제협력 기본협정> 항목하의 <중국-동남아국가연합 자유무역구 원산지 규칙> 집행과 관련한 규정》(署令 제108호) 제2조 “이 규정은 동남아국가연합 국가로부터 수입한 《협정》 항목하의 화물(제품리스트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에 적용한다. 다만 가공무역방식으로 수입한 화물은 예외로 한다.”를 “이 규정은 동남아국가연합 국가로부터 수입한 《협정》 항목하의 화물(제품리스트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에 적용한다.”로 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중화인민공화국과 동남아국가연합 간 전면적 경제협력 기본협정> 항목하의 <중국-동남아자유무역구 원산지규칙> 집행과 관련한 규정》(署令 제108호) 제13조 제2항 (2)호 “화물의 원시 상업송장 부본”을 “화물의 상업송장 원본”으로 개정한다.  (12)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상주기구 출입국 공용물품 감독관리 방법》(署令 제115호) 제10조 “상주기구가 수입하는 화물샘플, 광고물 및 임시 수입화물은 주관 세관의 심사 인가를 거친 후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화물샘플, 광고물 감독관리 방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임시 수입화물 감독관리 방법》의 규정에 따라 통관수속을 처리한다.”를 “상주기구가 수입하는 화물샘플, 광고물 및 임시 수입화물은 주관 세관의 심사 인가를 거친 후 세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통관 수속을 처리한다.”로 개정한다.  (13)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비거주 장기 여객의 출입국 자가용물품 감독관리 방법》(署令 제116호) 제4조 “소재 상주대표기구의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상주기구 등록증 또는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의 자체 통관신고 등록증기증명서를 제시한다.”를 “소재 상주기구의 중화인민공화국 상주기구 등록증 또는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등록등기증명서를 제시한다.”로 개정한다.  (14)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신고안건 처리 잠정규정》(署令 제120호) 제5조 “세관의 조사, 수사부문이 처리한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신고안건은 조사, 수사부문이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한다.”를 “세관의 수사부문이 처리한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신고안건은 수사부문이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한다.”로 개정한다.  (15)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세금징수 관리방법》(署令 제124호) 제9조 “규정에 따라 세관의 조사 또는 수사부문에 넘겨 처리해야 한다.”를 “규정에 따라 세관의 수사부문에 넘겨 처리해야 한다.”로 개정한다.  (16)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특혜관세 수입화물 원산지 관리방법》(署令 제149호) 제2조 “이 방법은 수혜국(명단은 별첨 1 참조)으로부터 수입한,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화물에 적용한다. 다만 가공무역방식의 보세 수입 및 내수판매 화물은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이 방법은 수혜국(명단은 별첨 1 참조)로부터 수입한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화물에 적용한다.”로 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특혜관세 수입화물 원산지 관리방법》(署令 제149호) 제11조 제1항 (3)호 “수출 수혜국으로부터 받은 원시 상업송장”을 “수출 수혜국으로부터 받은 화물의 상업송장 원본”으로 개정한다.  (17)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중화인민공화국과 칠레공화국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 항목하의 수출입화물 원산지 관리방법》(署令 제151호) 제2조 “이 방법은 칠레에서 수입한 《중칠 자유무역협정》 항목하의 화물에 적용한다. 다만 가공무역방식의 보세수입 및 내수판매 화물은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이 방법은 칠레에서 수입한 《중칠 간 자유무역협정》 항목하의 화물에 적용한다.”로 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중화인민공화국과 칠레공화국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 항목하의 수출입화물 원산지 관리방법》(署令 제151호) 제18조 제1항 (3)호 “수입화물의 원시 상업송장”과 제2항의 “수입화물의 원시 상업송장”을 각각 “수입화물의 상업송장 원본”과 “수입화물의 상업송장”으로 개정한다.  (18)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고차원 유학인재 귀국 및 해외 과학기술전문가 재중 근무 출입국물품 관리방법》(署令 제154호) 제6조 “그 소재단위가 《과학연구 및 수업용품 수입세금 면제 임시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를 “그 소재단위가 《과학연구 및 수업용품 수입세금 면제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로 개정한다.  (19)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 항목하의 수입화물 원산지 관리방법》(署令 제162호) 제2조 “이 방법은 파키스탄으로부터 수입한 《중파 자유무역협정》 항목하의 화물에 적용한다. 다만, 가공무역방식의 보세수입 및 내수판매 화물은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이 방법은 파키스탄으로부터 수입한 《중파 자유무역협정》 항목하의 화물에 적용한다.”로 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 항목하의 수입화물 원산지 관리방법》(署令 제162호) 제13조 제1항 (3)호 “화물의 원시 상업송장”을 “화물의 상업송장 원본”으로 개정한다.  (20)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 항목하의 수출입화물 원산지 관리방법》(署令 제175호) 제2조 “이 방법은 중국과 뉴질랜드 간 《중뉴 자유무역협정》 항목하의 수출입화물의 원산지 관리에 적용한다. 다만, 가공무역방식의 보세수입 및 내수판매 화물은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이 방법은 중국과 뉴질랜드 지간의 《중뉴 자유무역협정》 항목하의 수출입화물 원산지 관리에 적용한다.”로 개정한다.  (21)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아태무역협정> 항목하의 수출입화물 원산지 관리방법》(署令 제177호) 제2조 “이 방법은 중국과 《아태무역협정》기타 회원국(회원국 명단은 별첨 1 참조) 간 《아태무역협정》 항목하의 수출입화물에 적용한다. 다만 가공무역방식의 보세수입 및 내수판매 화물은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이 “방법은 중국과 《아태무역협정》 기타 회원국(회원국 명단은 별첨 1 참조) 간 《아태무역협정》 항목하의 수출입화물에 적용한다.”로 개정한다.  2. 세관의 규장에서 인용한 법률, 행정법규, 규장 명칭 및 조항 순서에 대한 개정  가. 아래의 규장에서 인용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행정처벌 실시세칙》”을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로 개정한다.  (22)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출입국 여객 수화물 감독관리방법》(署令 제9호) 제16조.  (23)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출입국 국제항생 선박 및 그 적재화물, 물품 감독관리방법》(署令 제24호) 제19조.  (24)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통과여객의 수화물 감독관리방법》(署令 제25호) 제9조.  (25)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경외 등산단체 및 개인의 출입국 물품 관리규정》（署令 제30호) 제12조.  (26)《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출입국 여객의 자가용 물품 관리규정》（署令 제35호）제9조.  (27)《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통과화물 감독관리방법》（署令 제38호）제12조, 제19조.  (28)《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출입국 여객 통관 관련 규정》（署令 제55호) 제15조.  (29)《국경장터(边民互市) 무역 관리방법》（署令 제56호） 제9조.  (30)《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중국국적 여객의 출입국 수화물 관리규정》（署令 제58호）제12조.  (31)《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격지 가공무역 관리방법》（署令 제74호）제10조.  (32)《〈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검사조례〉시행방법》（署令 제79호）제28조.  (33)《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기한경과 미신고 수입화물, 하역오류 또는 양륙과잉 입국화물 및 포기 수입화물 처리방법》（署令 제91호） 제9조.  (34)《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신고 관리규정》（署令 제103호） 제33조.  (35)《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보세창고 및 그 보관화물 관리규정》（署令 제105호） 제32조.  (36)《중화인민공화국 세관〈중화인민공화국과 동남아국가연합 간 전면적 경제협력 기본협정〉항목하의〈중국—동남아자유무역구 원산지규칙〉집행에 대한 규정》（署令 제108호） 제21조.  (37)《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무역 보세화물 가공구외 심가공이월 관리방법》（署令 제109호） 제12조.  (38)《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감독관리 화물 적재용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형태 화물차량 감독관리방법》（署令 제110호） 제30조.  (39)《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무역 조각, 잔여부품, 불량품, 부산물 및 재해 보세화물 관리방법》（署令 제111호） 제16조.  (40)《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상주대표기구 출입국 공용물품 감독관리방법》（署令 제115호） 제20조.  (41)《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비거주 장기여객의 출입국 자가용 물품 감독관리방법》（署令 제116호） 제17조.  (42)《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홍콩, 마카오 간 도로 화물운송기업, 차량 및 운전기사 관리방법》（署令 제118호） 제28조.  (43)《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출입국 택배 감독관리방법》（署令 제147호） 제29조.  나. 아래의 규장에서 인용한 법률, 행정법규 및 규장 명칭에 대한 개정  (44)《〈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검사조례〉 시행방법》（署令 제79호） 제27조 중의 “《세관 행정처벌 청문 임시방법》”을 “《세관 행정처벌 청문방법》”으로 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검사조례〉시행방법》（署令 제79호）제32조 중의 “《국가공무원 임시조례》”를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으로 개정한다.  (45)《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검사검증 관리방법》（署令 제138호） 제9조 중의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에 대한 화학감정 실시 규정》”을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화학검사 관리방법》”으로 개정한다.  다. 아래의 규장 중의 법률, 행정법규 조항 순서에 대한 개정  (46)《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세관법 위반 사건 제보 또는 협조조사 유공자에 대한 장려방법》（署令 제8호）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5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로 개정한다.  (47)《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출입국 여객 수화물 감독관리방법》（署令 제9호） 제7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47조, 제4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8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로 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출입국 여객 수화물 감독관리방법》（署令 제9호） 제10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5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로 개정한다.  (48)《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통과여객의 수화물 관리규정》（署令 제25호）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5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로 개정한다.  (49)《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출입국 여객의 자가용물품 관리규정》（署令 제35호） 제9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행정처벌 실시세칙》 제1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로 개정한다.  (50)《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통과화물 감독관리방법》（署令 제38호） 제11조“《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21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30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로 개정한다.  (51)《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중국국적 여객의 출입국 수화물 관리규정》（署令 제58호号） 제11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로 개정한다.  (52)《〈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검사조례〉 시행방법》（署令 제79호）제28조의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행정처벌 실시세칙》 제30조의 규정”을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제60조의 규정”으로 개정한다.  이 결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海关总署关于修改部分规章的**  **决定**  海关总署第198号令  《海关总署关于修改部分规章的决定》已于2010年11月15日经海关总署署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公布之日起施行。  署　长 盛光祖  二○一○年十一月二十六日  为全面推进依法行政，现决定对下列海关规章进行修改：  一、对下列海关规章中的有关规定作出修改  1．将《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进出境旅客行李物品监管办法》（署令第9号）第十七条第一款和第二款中“属于《分类表》第三、四、五类物品”修改为“属于《分类表》第三类物品”。  2．删除《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过境旅客行李物品管理规定》（署令第25号）附件1、2。  将《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过境旅客行李物品管理规定》（署令第25号）第四条“属于《旅客进出境行李物品分类表》（见附件1）第三、四、五类物品”修改为“属于《旅客行李物品分类表》第三类物品”。  将《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过境旅客行李物品管理规定》（署令第25号）第八条“均不得携带《中华人民共和国禁止进出境的物品表》（见附件2）（注）所列物品”修改为“均不得携带《中华人民共和国禁止进出境的物品表》所列物品”。  3．将《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进出境旅客通关的规定》（署令第55号）第六条“经海关办理手续并签章交由旅客收执的申报单副本或专用申报单证”修改为“经海关办理手续并签章交由旅客收执的专用申报单证”。  将《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进出境  旅客通关的规定》（署令第55号）第八条“《旅客进出境行李物品分类表》第二、三、四类物品”修改为“《旅客进出境行李物品分类表》第二、三类物品”。  4．将《边民互市贸易管理办法》（署令第56号）第五条“边境地区居民每人每日从边境口岸或从边民互市贸易区（点）内带进的物品，价值在人民币1000元以下的，免征进口关税和进口环节税；超过人民币1000元不足5000元的，对超出部分按《对入境旅客行李物品和个人邮递物品征收进口税办法》规定征税；超出人民币5000元的按《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口税则》征收进口关税和进口环节税，并按进出口货物办理有关手续”改为“边民通过互市贸易进口的生活用品（列入边民互市进口商品不予免税清单的除外），每人每日价值在人民币8000元以下的，免征进口关税和进口环节税。超过人民币8000元的，对超出部分按照规定征收进口关税和进口环节税。”  5．将《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中国籍旅客行李物品的管理规定》（署令第58号）第七条“或依照《对入境旅客行李物品和个人邮递物品征收进口税办法》向海关补缴进口税”修改为“或依照相关规定向海关补缴进口税”。  6．删除《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扶贫、慈善性捐赠物资免征进口税收暂行办法〉的实施办法》（署令第90号）第八条。  7．将《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超期未报关进口货物、误卸或者溢卸的进境货物和放弃进口货物的处理办法》（署令第91号）第十二条“法人或者其他组织”修改为“法人、其他组织或者个人”。  8．将《中华人民共和国海关计核涉嫌走私的货物、物品偷逃税款暂行办法》（署令第97号）第六条、第十二条“海关走私犯罪侦查机关、海关调查部门”修改为“海关相关部门”。  9．将《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执行〈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项下〈关于货物贸易的原产地规则〉的规定》（署令第106号）第二条“本规定适用于从香港进口的《安排》项下货物（产品清单详见《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税则》），但以加工贸易方式进口的货物除外”修改为“本规定适用于从香港进口的《安排》项下货物（产品清单详见《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税则》）”。  10．将《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执行〈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项下〈关于货物贸易的原产地规则〉的规定》（署令第107号）第二条“本规定适用于从澳门进口的《安排》项下货物（产品清单详见《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税则》），但以加工贸易方式进口的货物除外”修改为“本规定适用于从澳门进口的《安排》项下货物（产品清单详见《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税则》）”。  11．将《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执行〈中华人民共和国与东南亚国家联盟全面经济合作框架协议〉项下〈中国—东盟自由贸易区原产地规则〉的规定》（署令第108号）第二条“本规定适用于从东盟国家进口的《协议》项下货物（产品清单详见《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税则》），但以加工贸易方式进口的货物除外”修改为“本规定适用于从东盟国家进口的《协议》项下货物（产品清单详见《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税则》）”。  将《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执行〈中华人民共和国与东南亚国家联盟全面经济合作框架协议〉项下〈中国—东盟自由贸易区原产地规则〉的规定》（署令第108号）第十三条第二款（二）项“货物的原始商业发票副本”修改为“货物的商业发票正本”。  12．将《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常驻机构进出境公用物品监管办法》（署令第115号）第十条“常驻机构进境的货样、广告品及暂时进口货物，经主管海关核准后，按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进出口货样、广告品监管办法》和《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对暂时进口货物监管办法》的规定办理验放手续”修改为“常驻机构进境的货样、广告品及暂时进口货物，经主管海关核准后，按照海关相关规定办理验放手续”。  13．将《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非居民长期旅客进出境自用物品监管办法》（署令第116号）第四条“交验所在常驻机构的中华人民共和国海关常驻机构备案证或者所在外商投资企业的自理报关单位注册登记证明书”修改为“交验所在常驻机构的中华人民共和国海关常驻机构备案证或者所在外商投资企业的进出口货物收发货人注册登记证明书”。  14．将《中华人民共和国海关办理申诉案件暂行规定》（署令第120号）第五条“对海关调查、缉私部门经办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申诉案件由调查、缉私部门具体负责办理”修改为“对海关缉私部门经办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申诉案件由缉私部门具体负责办理”。  15．将《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征税管理办法》（署令第124号）第九条“应当按照规定移交海关调查或者缉私部门处理”修改为“应当按照规定移交海关缉私部门处理”。  16．将《中华人民共和国海关特别优惠关税待遇进口货物原产地管理办法》（署令第149号）第二条“本办法适用于从受惠国（名单见附件1）进口的享受特别优惠关税待遇货物，但是以加工贸易方式保税进口和内销的货物不适用本办法”修改为“本办法适用于从受惠国（名单见附件1）进口的享受特别优惠关税待遇货物”。  将《中华人民共和国海关特别优惠关税待遇进口货物原产地管理办法》（署令第149号）第十一条第一款（三）项“来自出口受惠国的原始商业发票”修改为“来自出口受惠国的货物商业发票正本”。  17．将《中华人民共和国海关〈中华人民共和国与智利共和国政府自由贸易协定〉项下进出口货物原产地管理办法》（署令第151号）第二条“本办法适用于从智利进口的《中智自贸协定》项下货物，但是以加工贸易方式保税进口和内销的货物不适用本办法”修改为“本办法适用于从智利进口的《中智自贸协定》项下货物”。  将《中华人民共和国海关〈中华人民共和国与智利共和国政府自由贸易协定〉项下进出口货物原产地管理办法》（署令第151号）第十八条第一款（三）项“进口货物的原始商业发票”和第二款中“进口货物的原始商业发票”分别修改为“进口货物的商业发票正本”和“进口货物的商业发票”。  18．将《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高层次留学人才回国和海外科技专家来华工作进出境物品管理办法》（署令第154号）第六条“应当由其所在单位按照《科学研究和教学用品免征进口税收暂行规定》办理有关手续”修改为“应当由其所在单位按照《科学研究和教学用品免征进口税收规定》办理有关手续”。  19．将《中华人民共和国海关〈中华人民共和国政府与巴基斯坦伊斯兰共和国政府自由贸易协定〉项下进口货物原产地管理办法》（署令第162号）第二条“本办法适用于从巴基斯坦进口的《中巴自贸协定》项下货物，但以加工贸易方式保税进口和内销的货物不适用本办法”修改为“本办法适用于从巴基斯坦进口的《中巴自贸协定》项下货物”。  将《中华人民共和国海关〈中华人民共和国政府与巴基斯坦伊斯兰共和国政府自由贸易协定〉项下进口货物原产地管理办法》（署令第162号）第十三条第一款（三）项“货物的原始商业发票”修改为“货物的商业发票正本”。  20．将《中华人民共和国海关〈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新西兰政府自由贸易协定〉项下进出口货物原产地管理办法》（署令第175号）第二条“本办法适用于我国与新西兰之间的《中新自贸协定》项下进出口货物的原产地管理，但是以加工贸易方式保税进口和内销的货物不适用本办法”修改为“本办法适用于我国与新西兰之间的《中新自贸协定》项下进出口货物的原产地管理”。  21．将《中华人民共和国海关〈亚太贸易协定〉项下进出口货物原产地管理办法》（署令第177号）第二条“本办法适用于我国与《亚太贸易协定》其他成员国（成员国名单见附件1）之间的《亚太贸易协定》项下进出口货物，但是以加工贸易方式保税进口和内销的货物不适用本办法”修改为“本办法适用于我国与《亚太贸易协定》其他成员国（成员国名单见附件1）之间的《亚太贸易协定》项下进出口货物”。  二、对下列海关规章中引用的法律、行政法规、规章名称及条文序号作出修改  （一）将下列规章中引用的“《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行政处罚实施细则》”修改为“《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  22．《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进出境旅客行李物品监管办法》（署令第9号）第十六条。  23．《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进出境国际航行船舶及其所载货物、物品监管办法》（署令第24号）第十九条。  24．《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过境旅客行李物品管理规定》（署令第25号）第九条。  25．《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境外登山团体和个人进出境物品管理规定》（署令第30号）第十二条。  26．《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进出境旅客旅行自用物品的管理规定》（署令第35号）第九条。  27．《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过境货物监管办法》（署令第38号）第十二条、第十九条。  28．《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进出境旅客通关的规定》（署令第55号）第十五条。  29．《边民互市贸易管理办法》（署令第56号）第九条。  30．《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中国籍旅客进出境行李物品的管理规定》（署令第58号）第十二条。  31．《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异地加工贸易的管理办法》（署令第74号）第十条。  32．《〈中华人民共和国海关稽查条例〉实施办法》（署令第79号）第二十八条。  33．《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超期未报关进口货物、误卸或者溢卸的进境货物和放弃进口货物的处理办法》（署令第91号）第九条。  34．《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申报管理规定》（署令第103号）第三十三条。  35．《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保税仓库及所存货物的管理规定》（署令第105号）第三十二条。  36．《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执行〈中华人民共和国与东南亚国家联盟全面经济合作框架协议〉项下〈中国—东盟自由贸易区原产地规则〉的规定》（署令第108号）第二十一条。  37．《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加工贸易保税货物跨关区深加工结转的管理办法》（署令第109号）第十二条。  38．《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用于装载海关监管货物的集装箱和集装箱式货车车厢的监管办法》（署令第110号）第三十条。  39．《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加工贸易边角料、剩余料件、残次品、副产品和受灾保税货物的管理办法》（署令第111号）第十六条。  40．《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常驻机构进出境公用物品监管办法》（署令第115号）第二十条。  41．《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非居民长期旅客进出境自用物品监管办法》（署令第116号）第十七条。  42．《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来往香港、澳门公路货运企业及其车辆和驾驶员的管理办法》（署令第118号）第二十八条。  43．《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进出境快件监管办法》（署令第147号）第二十九条。  （二）对下列规章中引用的法律、行政法规及规章名称作出修改。  44．将《〈中华人民共和国海关稽查条例〉实施办法》（署令第79号）第二十七条中的“《海关行政处罚听证暂行办法》”，修改为“《海关行政处罚听证办法》”。  将《〈中华人民共和国海关稽查条例〉实施办法》（署令第79号）第三十二条中的“《国家公务员暂行条例》”，修改为“《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45．将《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查验管理办法》（署令第138号）第九条中的“《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进出口货物实施化验鉴定的规定》”，修改为“《中华人民共和国海关化验管理办法》”。  （三）对下列规章中引用的法律、行政法规条文序号作出修改。  46．将《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检举或协助查获违反海关法案件有功人员的奖励办法》（署令第8号）第一条“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第五十八条的规定”修改为“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第十三条的规定”。  47．将《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进出境旅客行李物品监管办法》（署令第9号）第七条“按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第四十七条、第四十八条的规定”修改为“按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第八十二条的规定”。  将《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进出境旅客行李物品监管办法》（署令第9号）第十条“按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第三十三条的规定”修改为“按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第五十一条的规定”。  48．将《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过境旅客行李物品管理规定》（署令第25号）第六条“按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第三十三条的规定”修改为“按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第五十一条的规定”。  49．将《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进出境旅客旅行自用物品的管理规定》（署令第35号）第九条“依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行政处罚实施细则》第十五条的规定”修改为“依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第十九条的规定”。  50．将《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过境货物监管办法》（署令第38号）第十一条“按《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第二十一条的有关规定处理”修改为“按《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第三十条的有关规定处理”。  51．将《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中国籍旅客进出境行李物品的管理规定》（署令第58号）第十一条“按《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第二十三条规定处理”修改为“按《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第五十一条规定处理”。  52．将《〈中华人民共和国海关稽查条例〉实施办法》（署令第79号）第二十八条中的“《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行政处罚实施细则》第三十条的规定”修改为“依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第六十条的规定”。  本决定自公布之日起施行。 |